

대전지방법원 2018. 10. 24 선고 2017나110272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 청구]

전 문

원고, 항소인 A

피고, 피항소인 B

변 론 종결 2018. 9. 19.

판결 선고 2018. 10. 24.

제 1 심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. 8. 8. 선고 2017가단643 판결

주 문

1.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,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홍성군 E 전 324㎡중 별지 도면 표시 17, 16, 18, 29, 28,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마당 8㎡, 같은 도면 표시 18, 19, 20, 29, 1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화단 11㎡, 같은 도면 표시 20, 21, 30, 27, 28, 29,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디 부분 창고 8㎡, 같은 도면 표시 21, 22, 23, 24, 25, 30,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화단 4㎡, 같은 도면 표시 25, 26, 27, 30, 2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□ 부분 마당 4㎡, 충남 홍성군 F 도로 17㎡ 중 같은 도면 표시 6, 7, 8,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화단 2㎡에 대한 각 1/6 지분에 관하여 2012. 4. 23.

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원고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기각한다.

3. 소송 총비용 중 19/20는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주위적으로,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2. 4. 2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(원고는 제1심에서 충남 홍성군 G 전 616㎡ 중 1/6 지분 및 F 도로 24㎡ 중 1/6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다가 토지 분할로 인하여 대상토지에 변동이 생김으로써 당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. 이로 인하여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). 예비적으로,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. 4. 23.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(원고는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. 원고는 당심에서 주문 제1항과 같은 청구를 제2차 예비적 청구로 추가하였으나, 이는 위 예비적 청구의 양적 감축에 지나지 않으므로 따로 기재하지 않는다).

이 유

1. 기초 사실

가. 원고와 피고는 1992. 4. 2. 피고 소유인 충남 홍성군 C 전 165㎡ 및 그 지상 단층주택에 관한 매매계약(이하 '이 사건 매매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고,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1992. 4. 22. 접수 제5560호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쳤다.

나.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1990. 8. 9. 접수 제10992호로 각 분할 전의 충남홍성군 G 전 616㎡와 F 도로 24㎡ 중 각 1/6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다. 충남 홍성군 G 전 616㎡는 2017. 5. 25. 별지 목록 제1, 2, 3항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고, F 도로 24㎡는 2018. 6. 29. 별지 목록 제4, 5항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호증의 1, 2, 3, 갑 제7호증의 1, 2, 3, 갑 제8호증, 갑 제17호증, 갑 제1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

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항의 각 "이 사건 각 토지"를 "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"로, 제3면 제7행의 "갑 제4, 8호증"을 "갑 제4, 8, 9호증, 갑 제14호증의 1, 2, 3, 갑 제15호증의 1, 2, 3, 갑 제22호증"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제2항의 기재와 같으므로,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.

3.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마당, 화단, 창고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관한 판단

원고가 1992. 4. 2.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,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1992. 4. 22. 접수 제5560호로 충남 홍성군 C 전 165㎡ 및 그 지상 단층주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, 위인정 사실에 갑 제6호증의 1, 2, 갑 제19호증의 1 내지 16, 갑 제20호증의 1, 2, 갑 제2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을 더하여 보면, 원고가 1992. 4. 10. 위 C에 전입신고를 하고, 늦어도 1992. 4. 23.경부터 위 주택에 거주하면서 충남 홍성군 E 전 324㎡ 중 별지 도면 표시 17, 16, 18, 29, 28,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마당 8㎡, 같은 도면 표시 18, 19, 20, 29, 1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화단 11㎡, 같은 도면 표시 20, 21, 30, 27, 28, 29,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디 부분 창고 8㎡, 같은 도면 표시 21, 22, 23, 24, 25, 30,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화단 4㎡, 같은 도면 표시 25, 26, 27, 30, 2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□ 부분 마당 4㎡, 충남 홍성군 F 도로 17㎡ 중 같은 도면 표시 6, 7, 8,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화단 2㎡(이하 위 각 부분을 '이 사건 ㄱ 부분' 등으로 특정한다)를 점유해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가 소유의 의사로 선의,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하였다고 추정되고, 따라서 그로부터 20년인 2012. 4. 23.을 경과함으로써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. 갑 제7호증의 3,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, 원고가 2000. 4. 21.경 C 지상 주택을 원고의 처 H에게 증여하고, 위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, 이는 원고의 위 점유 사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.

따라서 이 사건 ㄱ, ㄴ, ㄴ, ㄹ, □, 나 부분 중 각 1/6 지분에 관한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

부분 중 1/6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2012. 4. 23.자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나. 나머지 도로 부분에 관한 판단

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,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이 사건 ㄱ, ㄴ, ㄷ, ㄹ, ㄱ, 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원고와 인근 거주민들을 위한 도로로 이용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, 나아가 원고가 위 도로 부분까지 20년간점유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.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.

4. 결론

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, 원고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없어 모두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염원섭, 판사 임성실, 판사 김덕완